



KOREAN REGISTER
TECHNICAL
INFORMATION

36, Myeongji ocean city 9-ro,
Gangseo-gu, Busan, 618-814,
The Republic of Korea
Phone : + 82-70-8799-8331
Fax : + 82-70-8799-8339
E-mail : convention@krs.co.kr
Date : 20 December 2019
Person in charge : Jeon Gye-jeong

No: 2019-IMO-12

Date: 20 December 2019

Subject : Cyprus 국적선의 BWMS Commissioning Test 시행에 관한 지침

IMO 선박평형수 관리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Control and Management of Ships' Ballast Water and Sediments, 2004. 이하 BWM 협약이라 함)은 2004년도에 채택된 국제협약으로서, 선박의 평형수를 통한 유해미생물 및 병원균 등의 이동을 최소화하고 금지하기 위한 국제적인 조치이며, 2017년 9월 8일 이후로 국제적으로 발효되었습니다.

MEPC 74차(2019.05)는 선박에 설치된 BWMS(Ballast Water Management System)¹⁾에 대하여 최초 또는 BWM 추가검사 시에 Commissioning Test가 수행되어야 함을 요구하는 BWM 협약의 E-1.1 및 E-1.5 규칙의 개정안을 승인하였으며, 이의 목적은 기구가 개발한 지침서를 고려²⁾하여 선박에 설치된 BWMS의 기계적, 물리적, 화학적 및 생물학적 처리과정이 적절히 작동하고 있음을 검증하기 위함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Cyprus 주관청에서는 자국 지침인 Circular No.20/2019를 발행하여, 2020년 1월 1일 이후 Cyprus 국적선에 설치되는 BWMS는 BWM.2/Circ.70에서 제공하는 지침에 따라 Commissioning Test가 수행되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동 기술정보를 통해 BWMS의 Commissioning Test를 위한 Cyprus 기국정부 요건을 아래와 같이 제공하여 드리오니, Cyprus 국적선의 선주, 조선소, 평형수 시험기관 및 관련단체 들께서는 동 사항을 숙지하시어 요건의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BWM 협약의 B-3 규칙에 따라, 2017년 9월 8일 이후에 건조된 선박들은 D-2 기준의 만족을 위한 BWMS의 탑재가 요구되며, 2017년 9월 8일 전에 건조된 선박들은 2019년 9월 8일 이후에 도래하는 IOPP 정기검사 시까지 D-2 기준의 만족을 위한 BWMS의 탑재가 요구됨

2) BWM.2/Circ.70 : Guidance for the commissioning testing of ballast water management system

1. 2020.1.1 이후 Cyprus 국적선에 설치되는 Ballast Water Management System(이하 BWMS)은 BWM.2/Circ.70에서 제공하는 지침에 따라 Commissioning Test를 실시해야 한다. 동 Test는 장비의 설치 시 선급 검사원의 입회 하에 수행되어야 하며, 주관청으로부터의 추가 승인은 필요하지 않다. 다만 Test 연기를 위한 면제는 시험기관의 이용이 불가능 할 경우 case by case로 선급에서 직접 주관청에 의해 승인 요청을 해야 한다.
2. Commissioning Test가 만족한 상태로 완료되기 전까지 D-2 규정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IBWM 증서의 Annex는 발행되거나 이서(endorse)되어서는 아니 된다.
3. Commissioning Test는 BWMS의 형식승인증서를 검증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나, Test와 관계되는 어느 구성품 또는 성능이 형식승인증서와 불일치 되는 경우에, 검사에 참여하는 검사원은 주관청에 통보하여 지침을 받아야 한다.
4. Sampling water의 수집 및 분석 프로세스는 시스템 설계 한계(system design limitations) 내에서 주변 환경에 따라 결정될 것이며, Sampling water는 BWM.2/Circ.42/Rev.1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직접 측정(direct measurement)을 수반한 지표 분석(indicative analysis)을 통해 분석되어야 한다. 지표분석을 수행하는 시험기관은 적절한 ISO 표준에 따라 인증되어야 한다.
5. 작동 Test가 성공적이고, 장비의 성능이 BWM 협약 부속서의 D-2 표준에 명시된 값에 적합함이 지표분석보고서를 통해 입증된 경우, Commissioning Test가 성공적으로 수행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특별한 요청이 없는 한 주관청으로의 별도 보고는 필요하지 않다.
6. Commissioning Test와 관련하여 수행된 모든 사항이 Ballast Water Management Book에 기록되어야 한다.

-끝-

첨부 : Circular No.20/2019 - 1부

배부처 : 모든 검사원, 선주, 조선소, 관련 업계

Disclaimer :
Although all possible efforts have been made to ensure correctness and completeness of the contents contained in this information service, the Korean Register of Shipping is not responsible for any errors or omissions made herein, nor held liable for any actions taken by any party as a result of information retrieved from this information service.